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경남정치망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2. 10. 12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경고 : 8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사실

○ 우량고객 우대대출 취급 소홀

- 2급 박○○ 외 2명은 2021. 9. 16. 차주 공○○에게 기업운전자금대출 2,587,000천원을 취급하면서 해당 담보물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우량고객 우대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고 250,000천원의 대출을 취급함.

○ 여신심사 소홀

- 2급 김○○은 2021. 10. 15. 차주 공○○의 우량고객 우대대출 250,000천원에 대한 심사의견서에 “건축 전 정비된 나대지임”이라는 내용을 표시하여 모대출 담보물이 건설중인 물건임을 인지 하였으나 이 경우 우량고객 우대대출 취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으며, 대출심사 위원인 상임이사 차○○ 외 3명은 심사의견서를 통해 모대출 담보물이 건설중인 물건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승인함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48-3조(심사대상) 제48-4조(운영) 제48-6조(업무처리) 제54조(심사 사항), 제5편 제587조(상품개요) 제589조(대상차주)